



## 현장실습지원센터 규정

제정일	2014.11. 1
개정일	2018. 4. 1
개정차수	3차
담당부서	현장실습지원센터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현장실습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 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소재) 센터는 본교 산학취업처 내에 둔다.

제 3조 (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현장실습 지원 및 관리
2. (삭제 2016. 7. 1.)
3. 그 외 현장실습 지원에 필요한 업무 (신설 2016. 7. 1.)

제 4조 (조직) ① 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.

제 5조 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 (개정 2018. 4. 1)

③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산업체경력 교직원 및 산업체 임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(개정 2018. 4. 1)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간 학생 현장실습 활동에 대한 결과평가 및 환류
2. 현장실습 활성화 대책 및 운영지원 방안
3. (삭제 2016. 7. 1.)
4. 실습학기제 지원 및 관리 (신설 2016. 7. 1.)
5. 그 외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

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(신설 2018. 4. 1)

⑥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는 산학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관장한다. (신설 2018. 4. 1)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